

# 업무교류협약서

(사)경기도물산업협회와 한국물산업협의회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국내외 물산업 활성화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“양 기관”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공동 사업을 개발하고, 기술개발 협력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협력 범위)

- 가. 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제도/정책 개선 등을 위한 공동연구
- 나. 물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,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
- 다. 물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및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상호지원 및 협력
- 라. 물산업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
- 마. 상호 인적/물적 인프라 교류 확대 및 활용 협력
- 바. 기타 국내 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

## 제3조 (협력 기간 및 해지)

본 협약은 “양 기관” 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기본 3년 간 유효하며, 협약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. 단, 각 기관의 법적 위상이 변하거나, 일방의 명시적인 해지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.

제4조 (실무위원회)

“양 기관”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 사항에 대한 이행과 업무협조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 (협약 이행)

“양 기관”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한다.

제6조 (협약 변경)

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“양 기관”이 모두 합의하여 조정한다.

제7조 (비밀 유지)

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주요 정보는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,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.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다.

제8조 (기타)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07. 23.



회장 이 광 희

이광희



회장 홍 승 관

홍승관